개인정보보호!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·시행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(제16473호, '19.8.20 제정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'20.8.2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각 시·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1부.
2.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8부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5처), 중앙행정기관(6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농협경제지주(원예사업부), 화훼 관련 단체

주무관	김현	사무관	정현주	원예경영과장	전결 2020.8.21. 김희중
협조자					

시행 원예경영과-3939 (2020. 8. 21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(어진동)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262 팩스번호 044-868-0132 / kimh@mafra.go.kr / 대국민 공개